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0차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동차하자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도입〉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11호)

2024.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제2204411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2
1. 자동차하자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도입(안 제47조의13 신설 등)	2

□ 맹성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11호)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맹성규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27.
3. 회 부 일 : 2024. 9.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환·환불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1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자동차하자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도입(안 제47조의13 신설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업무에 분쟁 조정을 추가하고, 조정부 회의록을 비공개하며,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효력 등 신설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등록) ----- ----- 제47조의13----- ----- ----- ----- ----- ----- -----.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생략) ②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장의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 제47조의7(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1.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현행	개정안
<u>가. 교환·환불중재</u> <u>나. 교환·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u> <신 설> 2. (생략) 3. <u>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u>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생략)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의 회의록은 제외한다)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생략) <신 설>	<u>1의2. 제47조의13에 따른 분쟁조정</u> 2. (현행과 같음) 3. <u>다음 각 목의 규정</u> ----- ----- -- <u>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u> <u>나. 교환·환불중재에 관한 규정</u> <u>다. 교환·환불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u>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8(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u>회의록 및 제47조의13에 따른 조정부의 회의록은</u> ----- ----- ----- ----- -----. ⑧ (현행과 같음) <u>제47조의13(자동차안전·하자의 분쟁조정 등) ①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u>

현행	개정안
	<u>차제작자들은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위한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u>③ 조정부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각각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중재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u> <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서면합의하여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u> <u>⑤ 분쟁의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u> <u>⑥ 제5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u> <u>⑦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의 조정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고 중재절차를 재개한다.</u>

현행	개정안
	⑧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중재절차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⑨ 분쟁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47조의 4제3항·제5항, 제47조의9(제2항은 제외한다), 제47조의10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재”는 “조정”으로, “중재부”는 “조정부”로, “중재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중재절차”는 “조정절차”로, “교환·환불중재 신청”은 “분쟁조정 신청”으로,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분쟁조정 결정”으로 본다. ⑩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안전·하자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47조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7조의4제1항에 따라 교환·환불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나. 검토의견

조정제도란 분쟁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독립적으로 구성된 제3의 조정자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며, ‘법원에 의한 조정제도(가사조정, 민사조정)’와 ‘조정위원회에 의한 행정형 조정제도’가 있음.

중재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¹⁾가 있어 강제집행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나, 조정의 경우 개별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판상 화해의 효력²⁾ 또는 민법상 화해 계약의 효력³⁾을 가짐.⁴⁾⁵⁾

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교환·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2) 재판상 화해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소송종료 및 강제집행력 등의 효력이 발생하고, 준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3)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 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정과 중재 비교〉

구 분	조 정	중 재
제3자	조정인·조정위원회	중재인 또는 중재판정부
제3자의 역할	조정안 제시	중재판정
결론	조정안에 대한 합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중재판정
효력	개별 법률에서 규정 (재판상 화해 ⁶⁾ 또는 민법상 화해 ⁷⁾)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자료 :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671.

현행법 제47조의2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로서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등의 구조나

6)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7)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8)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로서 소유한 사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자는 제외한다)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2.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나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

3.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이하 “중대한 하자”라 한다)로 인하여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를 자동차제작자등(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자동차.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자동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는 제1항제3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를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장치의 하자로 인하여 안전이 우려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거나 사용이 곤란한 자동차에 대하여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그리고 현행법 제47조의4⁹⁾는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현행법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교환·환불 중재¹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9)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②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사전에 수락한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③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2. 하자차량소유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3. 하자차량소유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대여시설이용자
4. 변호사

④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그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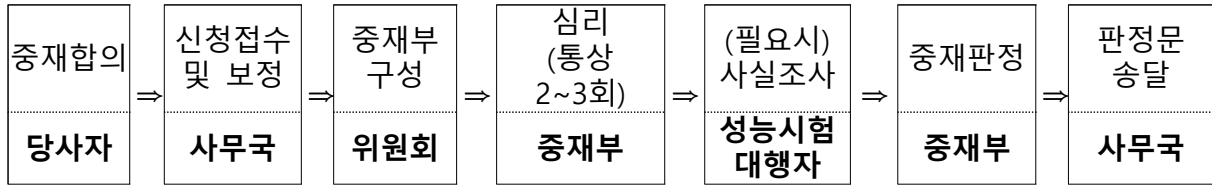
1.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자차량소유자의 하자차량 제시
3. 그 밖에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위하여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중재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재”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仲裁人)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절차 흐름도>



자료: 국토교통부

현행법 제47조의5¹¹⁾에 따라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교환·환불 중재는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중재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재법」 제36조¹²⁾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함.

1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5(중재 판정의 효력 등) ①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과 교환·환불중재 판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③ 교환·환불중재에 관련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법」을 준용한다.

12) 「중재법」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가.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해당 준거법(準據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던 사실 또는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이거나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무효인 사실

나.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사실

다.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룬 사실 또는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사실. 다만,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에 관한 부분과 대상이 아닌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닌 중재판정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라.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이 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법원이 직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나.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③ 중재판정 취소의 소는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정·해석 또는 추가 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법상 교환·환불 중재제도 외에도 자동차 하자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로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자동차 관련 분쟁조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¹³⁾

그런데 현행 교환·환불 중재제도에 대해서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의 최종결정까지 장시간(최종 결정시 190.8일)이 소요되고, 결정 내용도 교환·환불만 가능하고 보상·수리 등은 불가해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평균 결정 소요시간>

구 분	평균 소요일	대상 건
판정 송달 시 까지	190.8	385
중재절차 중 신청인이 취하 또는 당사자가 합의후 취하로 종료	103.2	1,534
개시 불가로 종료	34.4	921
계	92.8	2,840(전체)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개정안은 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여

④ 해당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3)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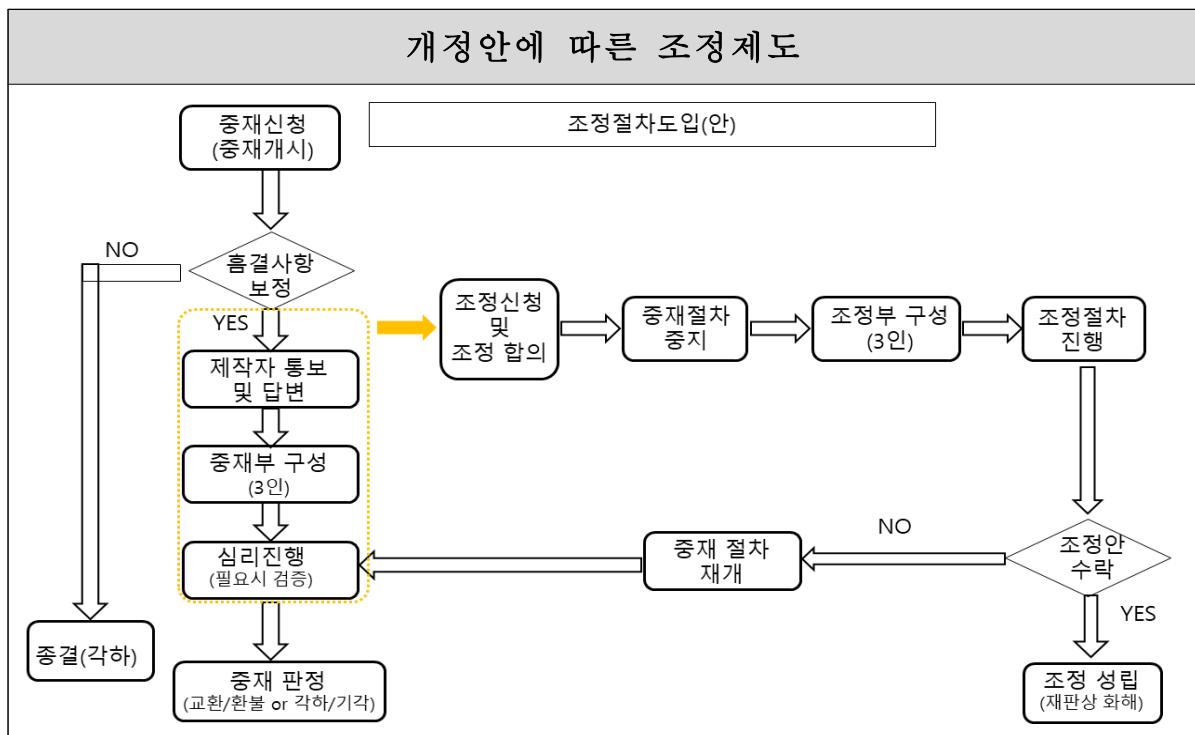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 수리·보상 등의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 타당해 보임.

개정안에 따른 조정제도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중재위원은 조정위원으로 지명이 불가하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선정이 가능함.

< 개정안에 따른 조정 제도 흐름도 >



자료 : 국토교통부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할 경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가지며, 당사자의 일방이 거부하는 등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중재 절차가 재개됨.

또한, 현행 교환·환불 중재제도에서는 중재절차 진행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취하 종료로 처리되고 있으나,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효력이 없어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분쟁이 지속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공식적인 조정절차를 통한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일반적으로 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종결정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중재 또는 소송절차보다 우선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중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절차가 개시되지 않는 경우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어, 소비자가 바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조정과 중재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국내 입법례에서는 중재절차 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입법례는 없으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재 신청을 조정 절차 중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⁴⁾

14)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분쟁의 조정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으며, 조정

한편 법령은 아니나 제·개정시 대법원의 승인을 받는 규칙인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¹⁵⁾에서는 중재절차 중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그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에 의한 합의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⁶⁾

부의 장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조정부의 회의는 조정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신청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항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 ⑤ 조정부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의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의 당사자는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⑥ 조정은 제3항에 따라 사건의 당사자가 기술침해 및 손해배상 등이 반영된 조정내용에 대하여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며, 이 경우 해당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사건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⑦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민사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6조(분쟁의 중재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중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재부를 둘 수 있으며, 중재부의 장은 법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② 중재부의 회의는 중재부의 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중재를 받으려는 자는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의 중재판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정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15)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은 법령은 아니나 중재법 제41조에 따라 대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

「중재법」 제41조(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제39조 조정

1. 당사자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그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에 의한 합의로 대한상사중재원 조정규칙(이하 “조정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인은 중재인과 다른 사람으로 선임한다.
2. 중재 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제1항의 합의를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3.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어느 당사자도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중재사건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4.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중재절차를 재개한다.

다.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 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공정거래위원회

중재는 양 당사자의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절차진행이 가능하나, 조정은 일방이 신청 가능하며, 당사자 합의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원하는 경우 조정을 중단하고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거칠 수 있음.

따라서, 조정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중재절차 전에 거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또한, 조정신청을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로 한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음.

개 정 안	공정거래위원회 수정의견
제47조의13(자동차안전·하자의 분쟁조정 등) ①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u>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중</u>	제47조의13(자동차안전·하자의 분쟁조정 등) ①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u>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u>

개 정 안	공정거래위원회 수정의견
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82

참고 1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현황

□ 교환환불 제도 개요

- (개념)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3~4번)되는 경우,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仲裁)를 통해 교환·환불하는 제도('19.1~)
- (요건)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중 다음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① 인도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
- ②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
- ③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 (절차) 중재 합의(중재규정 수락) → 중재 신청 → 홍보정 → 제작사 답변 → 중재부 구성(위원 3인) → 중재심리 → 중재판정(확정판결과 동일효력)

* 제작사는 신차판매 전 일괄 수락, 소비자는 신차구매시 또는 중재신청시 선택적 수락

□ 교환환불 중재규정 수락사 현황' 22년 기준)

- 현재, 국내외 주요 대규모 제작사(20개)는 모두 참여 중으로 2022년도 신차 등록대수의 약 99%이상 교환환불 제도 적용 중

* 기타 개별수입자 등 소규모 제작사는 미참여

□ 교환·환불 중재현황

(단위 : 건, '24.9.30. 기준)

년도	사건 접수	사건 종료	중재사건 종료 유형									
			교환		환불		보상·수리		개시 불가	각하	기각	취하
			판정	당사자 합의	판정	당사자 합의	화해 판정	당사자 합의				
2019	79	26	-	3	-	2	2	1	5	3	-	10
2020	668	424	1	14	-	17	3	45	229	16	27	72
2021	707	828	-	44	4	67	4	182	263	32	78	154
2022	444	550	5	49	1	37	-	120	154	15	57	112
2023	533	466	7	53	3	83	-	61	137	9	35	78
2024	636	546	3	81	6	98	1	73	133	14	59	78
계	3,067	2,840	16	244	14	304	10	482	921	89	256	504

* 개시 불가 : 중재신청 후 사무국이 접수 및 서류 검토 후 신청의 흠이 발견(중재합의 여부, 소유자 아님 등)되어 보정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하 : 중재절차 중 신청인이 하자 등이 없음 또는 요건 불충족 등을 인정하고 사건을 스스로 취소한 경우

* 소비자 권익보호 1,070건 : 교환 260건, 환불 318건, 보상·수리 등 492건

참고 2

개정안에 따른 중재 및 조정제도 흐름도

